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홍구 의원 외 13명)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9
----------	-----

발의연월일 : 2025. 2. 27.

발 의 자 : 김홍구 · 이선희 · 노성환
김창혁 · 백순창 · 김대진
윤철남 · 박승직 · 임병하
이형식 · 손희권 · 박선하
황명강 · 최태림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능정보사회 구현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제명과 인용 법령, 핵심 용어 정의, 명칭, 추진사업 등을 일부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인용 법령, 핵심 용어 정의, 명칭의 변경(제명, 안 제1~8조)
- 나. 지능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의 변경 및 신설(안 제10조)

다. 지능정보화 추진사업의 신설(안 제11조)

라. 용어 및 명칭의 변경(안 제12~13조, 제18조, 제20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전자정부법」

다.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280, '25. 2. 24.)

나. 규제 검토의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민자활성화과(정책기획관-2262, '25. 2. 20.)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정책기획관-2258, '25. 2. 20.)

라. 해당부서 의견: 의견없음

- 정보통신담당관(정책기획관-2258, '25. 2. 20.)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290, '25. 2. 24.)

7.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를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까지,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의”를 “지능정보화의”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고 시·군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지능정보화위원회”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경상북도지능정보화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지능정보화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을 “지능정보화 시책”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부서”를 “사업부서”로,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시책 등과의 연계·조정
6.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7.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의 제목 중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호 중 “정보화 취약계층”을 “정보 취약계층”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및 활성화 사업

7.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 사업

제12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와”를 “지능정보화와”로 한다.

제1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

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로 한다.

②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③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

례」”를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u>지역정보화</u>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국가정보화 기본법</u>」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정보</u>”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u>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u></p> <p>2. “<u>정보화</u>”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u>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u></p> <p>3. “<u>지역정보화</u>”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p>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 -- <u>지능정보화</u>-----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및 「<u>전자정부법</u>」----- ----- -----.</p> <p>제2조(정의) ①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 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삭 제>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6. (생략)

1. (현행 제6호와 같음)

7.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삭 제>

8.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

<삭 제>

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 (생략)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11. (생략)

<신 설>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2. (현행 제9호와 같음)

<삭 제>

3.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 지능정보화-----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고 시·군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화-----

② 지능정보화-----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지능정보화의 -----
-----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

② -----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

③ -----

1. 지능정보화 -----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 3. ~ 7. (생략)
-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 9. (생략)
-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략)

제6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⑦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

- 2. 지능정보화-----
- 3. ~ 7. (현행과 같음)

8.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9. (현행과 같음)

10. ----- 지능정보화-----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지능정보화위원회-----
----- 경상북도지능정보화
시행계획-----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

-----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
원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

정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
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

1. 2. (현행과 같음)

3. ----- 지능정보화-----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 지능정보화 시책-----
----- 지능정보화 사업-----

----- “지능정보화책임관”-----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

③ 사업부서-----

----- 정보화부서의 장-----
-----.

④ 지능정보화책임관-----
-----.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시책 등과의 연계·조

관리

-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 5. (생략)
-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신설>

<신설>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사업

정

- 4. 지능정보기술-----
- 5. (현행과 같음)
- 6.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 7.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 9.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능정보화-----

-----.

③ ----- 지능정보화 -----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역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화 취약계층 등 도민정보화 교육사업
 3. 정보문화 확산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4. 5. (생략)
 6. 그 밖의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업
- <신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

④ -----

-----.

1. (현행과 같음)
2. 지능정보화 ----- 정보
취약계층 -----

3. ----- 지능
정보서비스 과의존 -----

4. 5. (현행과 같음)
6.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및
활성화 사업
7.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정보화 사업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능정보화-----

-----.

② -----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
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
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
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
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
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
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
----- 행정
안전부장관-----

--.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행
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
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
침」-----.

관계법령 발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

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

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기관별 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절차 및 추진현황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에 대한 주요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 전문직위 및 위탁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의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배치,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 제명과 인용 법령, 용어 정의, 명칭 등의 일부개정과 관련되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함.

4. 작성자

- 예산입법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김승범 054-880-5052